

불복하거나, 2월 이내에 결정 내용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 불복의 단계

구제제도는 2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1) 불복 내용 제기(representations)

납세자는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는 council 정부에 서면으로 불복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주소, 불복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council 정부는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council 정부는 이를 2개월간 심의한다. 이 단계에서는 납세자는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council 정부가 이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2월 이내에 결정 내용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4월 이내에 평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평가법원에 대한 심사청구

평가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 이는 통상 1일을 넘지 않는다.

IX. 가산세

1. 가산세(penalty)의 부과

council 정부는 납세자가 법령에 규정한 과세 정보 제공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2. 가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납세자가 가산세 부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우선 council 정부와 이를 상의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평가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산세는 council tax와는 달리 평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